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7,252,105	15,517,563
일반회계	504,917,473	15,147,524
특별회계	12,334,632	370,039
기타특별회계	12,334,632	370,03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203,430	36,103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61,128	40,834
건축진흥특별회계	609,000	18,27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617,295	18,51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2,834	7,285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16,015	3,48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410	1,902
드림빌특별회계	2,123,097	63,69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14,276	42,4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84,147	137,5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10,20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